

##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제2815호
의 결	2024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의안번호	2815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4.

발 의 자 : 김향숙, 김원순, 최두임  
이정숙, 정영환, 이쌍자,  
김석한 의원(7인)

##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발 의 자	김향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. 7. 4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35호

- 예고기간: 2024. 7. 4. ~ 2024. 7. 9.(5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 1건(경제기업과)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

조례안 내용	수정안	수정이유
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구매촉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구매촉진 계획”이라 한다)을 <b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b>	- 조례 2조3항 ‘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.’라는 규정에 의하면, 타지역 생산품을 들여와 지역에서 판매만 할 경우 가격 경쟁력, 유통 등 부분에서 영세한 지역 생산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지역 내 생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초래 등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결과 발생 우려됨. - ‘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은 특정 지역 상품에 대한 강행 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 적절한 문맥이 요구됨. - 공공기관의 물품, 용역, 공사 구매 시 규제에 의한 제약이 따를 수 있고, 중장기적으로 지역 업체의 외부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제4조 1항 규정을 ‘~ 할 수 있다’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 - ‘23년부터 도내 4개 시군에서 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 상에도 구매 촉진을 위한 규정으로 ‘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’로 제정되어 있음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  
가. 「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 및 읍·면  
나. 고성군의회  
다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이 출자·출연한 기관
2. “지역업체”란 군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지역상품”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
#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다.

**관 계 법 령(발췌)**

**제4조(계획의 수립)**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구매촉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증장기 목표
2. 지역상품 통계 및 현황
3.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계획
4.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지역상품 우선구매)** ①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·구매와 공사·용역·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중소기업기본법**

**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**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**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소상공인기본법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